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김문수 · 정준호
박지원 · 이정문 · 양부남
주철현 · 신정훈 · 안도걸
서미화 · 안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「군형법」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5·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상훈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,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

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제4호의
3 신설 등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「상훈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5조제5항제4호의3에 해당하여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족에게 그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제2호 중 “제7조제2항에”를 “제7조제2항·제3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5항제4호의3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. 1. ~ 4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⑥·⑦ (생략) 제7조(이장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<u>4의3. 「상훈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</u> 5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 제7조(이장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<u>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에 안장된 사람이 제5조제5항 제4호의3에 해당하여 안장대상 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족 에게 그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 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</u> 제16조(안장비용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
제16조(안장비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
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.	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조제2항에</u> 따라 국립묘지	2. <u>제7조제2항 · 제3항에</u> -----
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	-----
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	-----
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	-----
생하는 비용	-----